

#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, 만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,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임
- 나.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, 맞춤형 사례관리, 민간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·안정적인 자립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커뮤니티시설동 210호, 212호, 213호(한강로2가, 용산 베르디움프렌즈)
- 규모 : 478.98㎡(사무실, 상담실, 창고 등)

## 나. 위탁내용

### ○ 위탁사무

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진로·취학 등 지원
-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
-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
- 지역사회 자원 발굴·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
-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
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
-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
-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○ 위탁기간 : 5년(2024.1.1.~2028.12.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'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복지법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

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자립준비청년에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,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, 민간자원 발굴·연계,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필요함
- 아동복지시설 운영, 자립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아동·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·단체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아동복지법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아동복지법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

-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(이하 "자립지원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김현정(☎ 2133-5175 )